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0. 5. .
발 의 자	장세구 의원 외 7명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세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 5. .

발 의 자 : 장세구 · 강승수 · 김재상 · 김춘남
송용자 · 신문식 · 이선우 · 장미경
의원(8명)

1. 제안이유

- 관련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4.7.공포, 2020.5.27.시행)되었으며,
- 이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사전신고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변경 (제20조제2항)
- 나. 제20조제2항 변경에 따른 제4항 삭제(제20조제4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나.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의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② <u>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u> -----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	<삭 제>
⑤ <u>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u>	⑤ ----- ----- ----- ----- <u>그 의원의</u>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5. 27.]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 2020. 5. 27.]